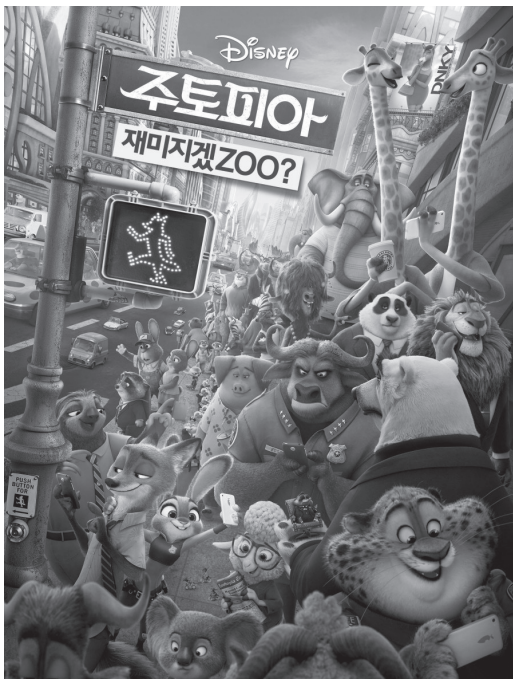


영화 『주토피아(zootopia)』로 알아보는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오늘 있을 법한 이야기에서는 영화 『주토피아(zootopia)』를 통하여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개봉한 <주토피아(zootopia)>는 평화롭던 도시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사건을 해결하려는 토끼 경찰관 ‘주디’와 사기꾼 여우 ‘닉’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디는 당근모양의 녹음기로 닉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닉을 협박합니다.

결국 둘은 한 팀이 되고, 닉은 주디를 도와 수사에 협조합니다.

현실에서도 간혹 주디처럼 소형 녹음기를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디와 많은 사람들의 비밀녹음은 법적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 녹음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

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비밀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

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다(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대법원 판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비밀녹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

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반면, 비밀녹음을 한 사람이 3인 사이의 대화에서 다른 2인의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대화 분량 및 주제 면에서 다른 2인의 비중이 컸다고 해도 녹음자 역시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Q. 회의나 강연에서도 녹음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는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경우들에서 비밀녹음 내용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제4조를 통하여 불법적인 검열이나 감청등에 의한 위법수집된 증거능력을 구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Q. 녹음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위법사유에 해당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녹음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디는?

〈주토피아(zootopia)〉의 주디와 닉을 개인대 개인으로 바라보면, 주디가 녹음한 대화는 주디와 닉 사이의 대화였으므로 해당 녹음이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관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